

심의 및 자문수당지급 등급 산정표

산정항목	산정기준	점수	선택	
개최근거 (15점)	법령·정부방침·서울시 방침, 우리공사 사규 등에 의거, 안전에 대하여 외적 심사 및 의결이 반드시 필요한 위원회	15	15	
	SH 업무편람, 내부 방침에 의거 공사 내부 필요에 의해 설치·운영되는 단순 자문 성격의 회의	5		
사전검토 (30점)	사전 검토기간이 3일 이상	30		
	사전 검토기간이 3일 미만	15	15	
심의결과 제출방법 (15점)	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	- 발주관련, 기술선정 등 심의 평가표 및 의결서 서명시	15	15
		- 단순 자문의견서 제출 - 단순 자문의결서 서명시	5	
		- 단순 참석시	0	
대외공모 및 발주관련여부 (20점)	대외공모심사, 외부용역발주, 수급업체(용역포함) 평가 등에 해당	20	20	
	사내 업무 활용, 단순자문	10		
전문성 (20점)	참석 위원의 전문 자격 및 경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위원회 및 회의	20	20	
	전문 자격 및 경력 요건 필수적으로 요구되지 않는 위원회 및 회의	5		
총계(100점 만점)			85	

2021년 10월 27일

산정자 : 전기사업부 조 기 현

확인자 : 전기사업부장 최 용 석

조기현
최용석

심의 및 자문수당지급 기준

[단위 : 만원, 개최 건별 지급]

등급	등급기준	대면출석			화상회의방식		
		기본수당 (4시간)	추가수당	총 지급수당	기본수당 (4시간)	추가수당	총 지급수당
S	95점 이상	37	18	55	27	14	41
A	81~94	29	14	43	21	11	32
B	71~80	24	12	36	18	9	27
C	70점 이하	20	-	20	15	-	15

- 주1) 의결 및 자문서 제출 등을 제외한 단순 참석인 경우 C등급 적용
 - 주2) C등급의 경우 위원회 및 회의시간이 2시간 미만일 경우 15만원만 지급
 - 주3) 추가수당은 등급별 기본수당 지급기준 시간을 초과하였을 경우에 지급하며, 지급기준 시간(4시간)에서 1시간이 초과하였을 경우 지급
 - 주4) 기본수당과 추가수당을 합한 총 지급수당은 건별 최대 금액을 넘을 수 없음
 - 주5) 대면출석회의를 기준으로 하며, 서면으로 심의 및 자문 진행시 기본수당의 1/2을 지급
 - 주6) 화상회의 방식의 경우 출석을 위한 소요시간 등의 비용 저감으로 대면출석회의 기준의 75% 지급
 - 주7) PA자문의 경우 A등급 기본수당을 1일 기준으로 PA제도 운영방안에 따라 지급
- 관련근거 : 2020년도 PA제도 운영방안 검토보고(공공개발사업본부장 방침 제22호, 공공개발부-312, 2020.02.03, 매년갱신)